



#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상속세제 개선방향

Free Market  
Free Enterprise  
Free Competition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2019. 9. 4.(수)



# Contents

## I. 검토 배경

## II. 기업승계 관련 상속세제

## III. 상속세제의 국제비교

## IV. 개선과제 제언

## 검토 배경

### ◆ 최대 65%에 달하는 상속세 부담과 까다로운 가업상속공제 때문에 기업의 경영권 매각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 상속세 부담과 까다로운 가업상속공제 때문에 기업승계가 어려워진 창업주들이 한국M&A거래소(KMX) 또는 사모펀드에 회사매각을 의뢰하고 있음
  - ✓ 작년 한해 KMX에 매각을 의뢰한 기업(730개) 중 상속하지 않고 매각하여 현금으로 물려준다는 기업이 118개(16.2%)였음
- 2018년 중견기업 실태 조사에서도 중견기업의 84.4%가 '기업승계계획이 없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상속세 부담(69.5%)이 가장 컸음

"우리 회사 좀 팔아주세요."

A(72) 대표는 최근 국내 최대 M&A(인수·합병) 플랫폼 운영 기관인 한국M&A거래소(KMX)에 회사 지분 100% 매각을 의뢰했다. A대표는 1980년대에 이 회사를 창립해 연 매출 150억원에 영업이익 10억원 이상을 내는 '알짜' 자동차 부품 회사로 키웠지만 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많은 상속세를 내면서 자녀들에게 회사를 물려줄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

(조선일보, 2019.04.22.)

## 검토 배경

- ◆ **기업승계 문제가 선결되어야 경영 의욕도 높아지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텐데, 지금 상속세제 하에서는 기업승계가 사실상 불가능함**
  - 상속세가 차지하는 내국세 비중(약 1%, 2017년 기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의 재분배와 공평과세라는 취지 하에 지속적으로 상속세를 강화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가업상속공제금액을 확대했지만, 그 적용이 제한적이고 사후요건도 엄격해서 활용도가 매우 낮은 상황임
- ◆ **결국 상속세의 중(重)과세는 조세수입에 기여하지 못하면서 경영의 축소나 매각을 유인하여 기업의 유지·발전을 저해하는 조세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업승계에 대한 상속과세의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한 상황임**
  - 기업은 승계시 상속세 부담을 대비하기 위해 재투자보다는 기업자산 매각 또는 배당 증가를 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기업의 성장동력 및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
  - 이제는 경제의 토대인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여, 그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





# Contents

## I. 검토 배경

## II. 기업승계 관련 상속세제

## III. 상속세제의 국제비교

## IV. 개선과제 제언

1. 현행 상속세제
2. 가업상속공제 제도
3. 2019 세법개정안

# 1. 현행 상속세제

## ◆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10~50%의 5 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과세됨

-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평균 최고세율 25.3%의 2배에 달하고, 일본(55%) 다음으로 높음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초과
세율	10%	20%	30%	40%	50%

-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 평가액에 할증평가(10~30% 가산)를 적용하여 과세, 최대주주 주식 할증과세시 최대 65%의 세율처럼 적용될 수 있음
  - ✓ 2019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일반기업의 할증률은 20%로 통일하고, 중소기업은 면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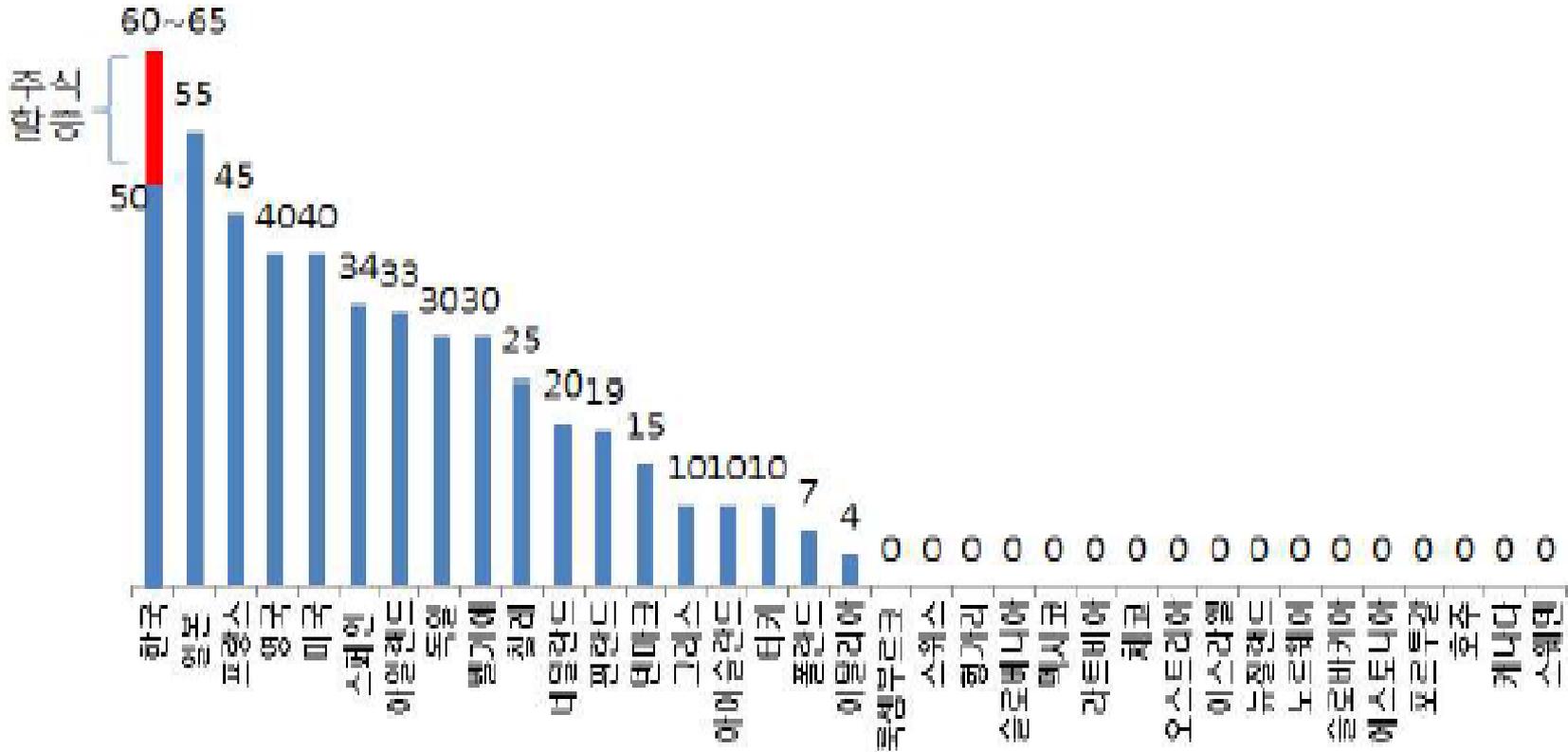
최대주주 등 지분율	할증률(일반기업 대상)	할증률(중소기업 대상)
50% 이하	20%	10%
50% 초과	30%	15%



# 1. 현행 상속세제

## ◆ 직계비속의 기업승계시 상속세 최고세율

(2017년, %)



주: 우리나라는 최대주주 할증평가시 최고세율이 60 ~ 65%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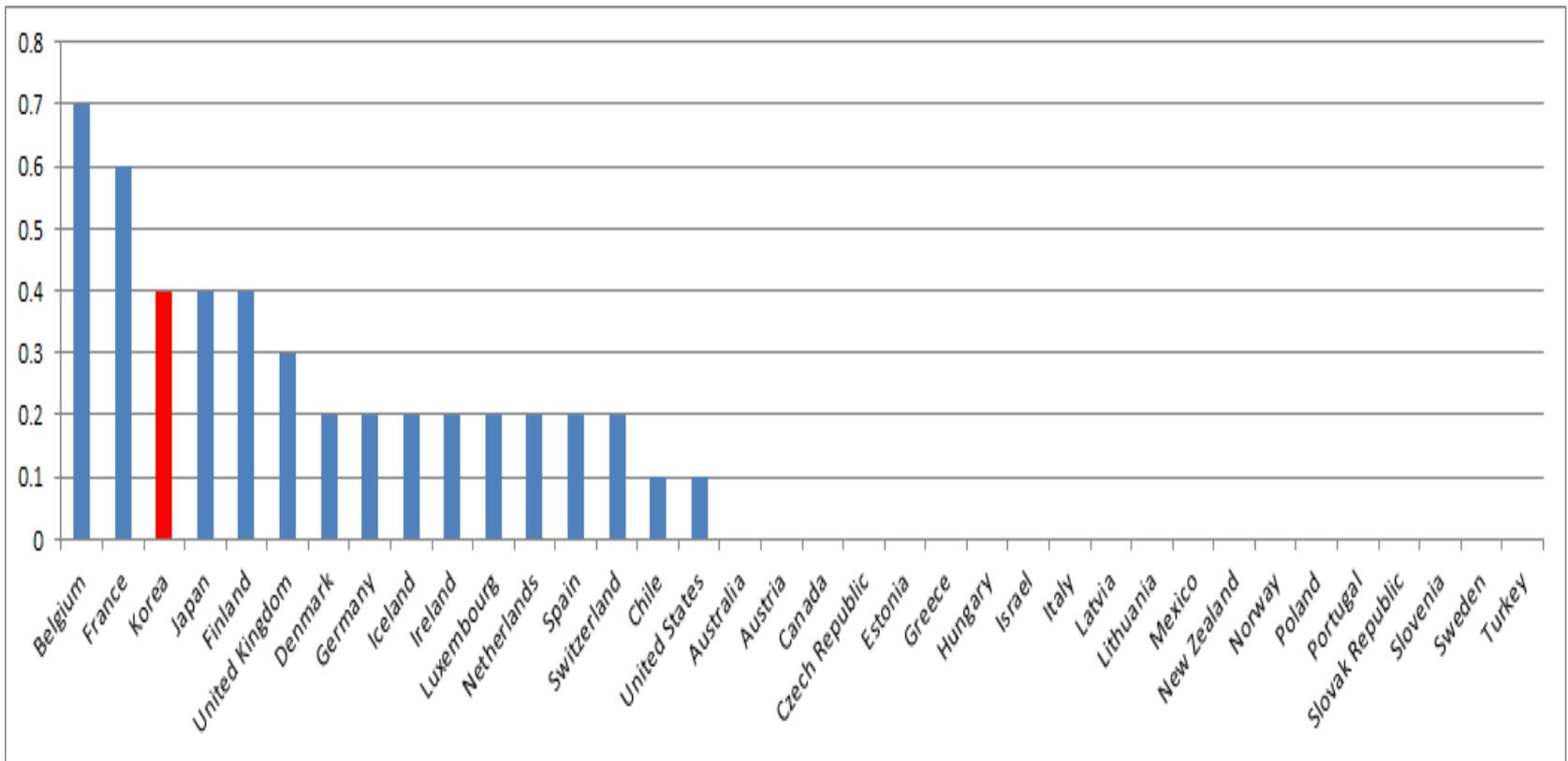
자료: EY 한영, Worldwide Estate and Inheritance tax guide 2018.



# 1. 현행 상속세제

◆ 2017년 기준 상속세액은 2조 3,419억원이며, 전체 국세 265조 3,849억원 중 상속세는 0.8%를 차지함

- 2017년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0.4%로 OECD 국가 중 3번째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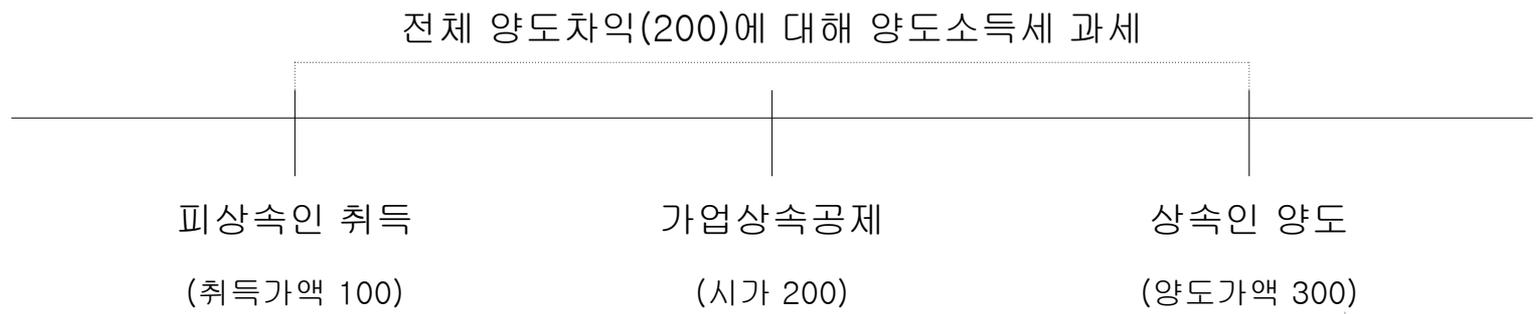


자료: OECD statistics(<https://stats.oecd.org>), (2017년, %)



## 2. 기업상속공제 제도

- ◆ 1997년부터 기업상속을 장려하기 위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기업상속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적용대상이 한정적이고, 요건이 엄격해서 활용 저조
  - 우리나라는 적용대상을 매출액 3천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제한했고,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기업영위나 상속인의 기업종사·대표자취임 등 엄격한 적용요건 및 기업·고용 유지 등 사후요건을 충족해야 함
  - 한편,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이라도 추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의 가액이 아니라 피상속인(사망자)의 취득가액으로 함
    - ✓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재산은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이연'됨



## 2. 기업상속공제 제도

### ◆ 현행 기업상속공제 제도와 2019 세법개정안

구분		현행 내용	2019 세법개정안
요건	적용대상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자산 5천억원 이하 중소기업	-
	기업 및 피상속인	<기업영위기간> ·10년 이상 경영 ·기간 중 50% 이상 대표자 종사 <지분율> ·특수관계인 포함 50% (상장기업 30%) 이상	-
	상속인	·2년내 기업종사 및 대표자 취임	-
기업상속공제 금액		<공제금액> 100% <한도> ·200억원(10년이상), 300억원(20년이상), 500억원(30년이상)	-
사후관리		<사후관리기간> 10년 ·기업유지: 대표자 유지, 휴·폐업 금지, 업종유지(소분류내 변경 허용) ·기업자산 20% 이상 처분금지 ·지분유지 ·고용유지: 매년 80% + 10년 평균고용 100%(중견기업 120%)	7년 ·중분류내 변경허용  ·예외사유 추가 - ·중견기업도 100%



## 2. 가업상속공제 제도

◆ 2011~2017년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제도 평균 이용건수는 76건, 공제금액 2,089억원이지만, 독일은 연평균 1만2,500건, 공제금액 284억유로(한화 약36.5조원)에 달함

- 대표자 경영기간, 고용유지, 업종유지, 자산유지 등 공제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도가 낮고, 독일과 비교할 때 100배 이상 차이남
- 현행 제도 및 2019 세법개정안도 독일의 제도에 비해 공제대상과 사전·사후요건 모두 엄격하고, 특히 고용유지 요건의 기준이 근로자수가 아니라 급여총액으로 전환될 필요

결정 현황	한 국		독 일	
	건 수	공제금액(백만원)	건 수	공제금액(1,000유로)
2015년	67	170,593	24,006	56,780,667
2016년	76	318,378	10,636	21,424,522
2017년	91	222,598	9,260	20,387,105
평균 (2011년 ~ 2017년)	76	208,949	12,513	28,409,179

자료: 국세통계연보, Finanzen und Steuern(Erbschaft- und Schenkungsteuer).



### 3. 2019 세법개정안

◆ 정부는 2019.7.25.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 및 가업상속공제 개선이 포함된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으며,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2019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 가업상속공제는 사후관리기간 단축(10년→7년), 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소분류 →중분류), 중견기업의 고용유지의무 완화(근로자수 120%→100%) 등의 사후관리 요건을 일부 완화했고,
- 최대주주할증평가 관련 할증률을 일반기업은 20%, 중소기업은 0%로 조정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지분율 및 기업규모에 따라 할증률 차등적용			<input type="checkbox"/>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적용, 지분율에 따른 차등 적용은 폐지		
지분율	일반기업	중소기업	구 분	일반기업	중소기업
50% 이하	20%	10%	할증률	20%	0%
50% 초과	30%	15%			
※ 중소기업은 '20년말까지 할증적용 배제(조세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할증 배제 특례 삭제(상증세법에 반영)		



### 3. 2019 세법개정안

#### ◆ 2019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상속세 완화방안은 그 효과가 의심됨

- '가업상속공제 개정안'은 일부 사후관리 기간과 고용유지의무를 완화했지만, 제도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한 '적용대상'이나 '사전요건'에 대한 개편은 포함하지 않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임
  - ✓ 특히 고용유지의무 요건도 근로자수 기준이 아니라 신속적인 운영이 가능한 총급여 기준으로 전환되어야 4차 산업혁명의 기업환경에 적합할 수 있음
- 최대주주할증과세 개정안 관련 중소기업 할증평가 폐지는 그동안 계속 적용을 면제해왔으므로 실질적 효과가 없을 것이고,
  - ✓ 일반기업 할증과세율을 20%로 단일화한 것은 현행 최대주주할증평가과세율 30%가 비상장법인 외에는 적용대상 사례가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개정안으로 일반기업의 할증과세 세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할 수 없음
- 기업 관련 증세만을 추구하던 현 정부가 이제라도 조금이나마 방향을 선회한 점은 다행이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은 기업의 계속성 유지 및 국제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함





# Contents

## I. 검토 배경

## II. 기업승계 관련 상속세제

## III. 상속세제의 국제비교

## IV. 개선과제 제언

1. 주요국의 기업승계 상속세제
2. 주요국의 주식 할증평가 제도
3. 해외 대기업 경영권 승계 사례

# 1. 주요국의 기업승계 상속세제

- ◆ 우리나라는 2000년 상속세율 및 과표 구간을 강화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지만, 2000년대 들어 스웨덴(2005년), 체코(2014년) 등 많은 국가가 상속세를 폐지하였고 상속세를 완화·폐지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임
  - 상속과세를 통해 소득재분배와 경제적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인식 하에 자본유출을 막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소득재분배에 보다 유용하다는 사고를 바탕으로 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 13개국은 폐지 또는 미도입
    - ✓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들은 자본이득세로 대체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주로 피상속인의 미실현된 자본이득을 상속인이 처분할 때 과세하도록 이연하고 있음
  - OECD 회원국 총 36개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23개국(63.8%),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13개국(36.2%)인데, 상속세를 부과하는 23개국 중, 직계비속에게 상속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국가는 14개국이며 이 중 4개국은 상속세가 면제됨
    - ✓ 따라서 현재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OECD 절반 가량(17개국)임



# 1. 주요국의 기업승계 상속세제

- ◆ 해외 기업승계 세제지원제도는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까지도 대상이며, 대부분의 적용 요건이 우리나라보다 간소화되어 있음
  - 영국, 아일랜드, 스페인 등은 기업규모별 제한이 없고, 대부분의 사후관리 기간이 우리나라보다 짧음
    - ✓ 상속 후 최소 기업경영 기간은 프랑스 3년, 독일 5년으로 우리나라보다 짧고, 지분보유 최소 의무기간도 프랑스 4년, 독일·일본 5년으로 우리나라보다 짧음
    - ✓ 고용유지요건도 우리나라는 10년 이상으로 엄격하지만, 일본(5년), 독일(5~7년), 프랑스는 동 요건이 없음
  - 특히, 독일의 제도는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2016년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 요건이 엄격하지 않은 상황임
    - ✓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가업영위나 상속인의 가업종사·대표자 취임 등은 독일의 제도상 요건이 아니며, 피상속인의 지분율도 우리나라의 50%(상장기업은 30%)에 비해 독일은 25%로 엄격하지 않음
    - ✓ 사후관리기간 중 고용유지 요건도 총급여 5년간 400% 또는 7년간 700%이고, 우리나라의 일자리수 10년 1,000%보다 기간 및 비율 측면에서 엄격하지 않음



# 1. 주요국의 기업승계 상속세제

## ◆ 주요국의 기업승계 세제지원제도 비교

구분		독일	일본	프랑스
사전 요건	피상속인 요건	<기업규모 제한 X> ·(85%공제) 비사업용 자산 50% 이하, (100%공제) 비사업용 자산 10% 이하 ·자산 2,600만유로 초과 기업은 필요성 심 사 절차	·비상장 중소기업, 승계회사 대표와 특수관계인이 합하여 주식 50% 초과 보유	·제조업(공업, 수공업), 상업 농업, 자유업의 업종제한 있으며, 최소 2년간 지분 보유
	상속인 요건	X	·피상속인의 친족, 상속개시 직전 임원, 상속개시일로부터 5개월내 대표 취임 ·최대주주, 의결권주식의 50% 초과 보유	X
가업상속 공제금액		·자산 2,600만유로 과시 75만유로당 1%p 씩 공제율 감소, 최대공제가능 자산 9천 만유로	·발행주식총수의 2/3 한도 (2019.4월부터 공제상한 없 음), 비상장주식의 80% 상당 상속세 유예	주식가치의 75%
사후관리		① 85% 공제요건-사업승계후 5년이상 가 업 및 고용유지(급여총액기준으로 5년간 400% 이상) ② 100% 공제요건- 사업승계후 7년이상 가업 및 고용유지(급여총액기준으로 7년 간 700% 이상) ※종업원 5인이하 급여총액 유지의무 면제	상속후 5개월내 대표이사 취 임 및 이후 5년간 대표직, 상 속받은 지분 유지 ·근로자 수의 80% 이상 5년간 유지(탄력 적용)	·상속후 4년간 면세 적용받 은 지분 유지 ·3년이상 가업 운영, 매년 면 세적용요건 입증 ·고용유지 요건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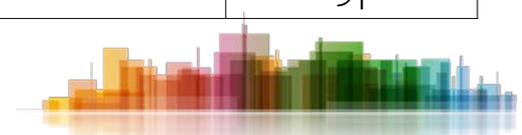


## 2. 주요국의 주식 할증평가 제도

###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제도가 없음

- '미국'은 개별사안별로 할증·할인을 하며, '영국'은 소액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할인이 가능하나 할인폭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독일'은 순자산가치 등을 기초로 평가한 주식가액을 대주주의 주식 가치라고 보며,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10% 할인 평가
- '일본'은 비상장주식 평가시 지배주주 주식과 그 외 주식에 대해 평가방식 차이有
  - ✓ 지배주주 주식은 순자산가액, 유사상장회사 주가 등 일반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고, 소액주주 주식은 배당금을 기초로 평가
  - ✓ 배당금으로 평가한 소액주주 주식 평가액이 지배주주 평가액보다 클 경우 지배주주 평가액을 한도로 함. 즉, 소액주주 주식 평가액은 지배주주 주식보다 낮게 평가되도록 하여 소액주주 주식은 할인 평가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대상	최대주주 (상장·비상장)	개별주식	지배주주	소액주주	소액주주
할증율	-지분율 50% 이하 : 20% -지분율 50% 초과 : 30%	개별사안별 할증, 할인	없음	할인가능	10% 할인평가



### 3. 해외 대기업 경영권 승계 사례

- ◆ [미국 Ford] 포드재단에 대한 주식(보통주) 출연과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으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권 유지
  - 차등의결권(Class B)은 1주당 16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Class B를 Ford 가문이 소유
- ◆ [스웨덴 발렌베리] 지주회사(Investor AB)를 설립해서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차등의결권 제도를 통해 소유권 확보
  - 차등의결권제도를 통해 A주 1주는 B주 10주와 같은 의결권을 갖게 되므로 발렌베리 재단이 가진 지주회사 지분은 23%에 불과하지만 의결권은 50%임(2017년 기준)
  - 또한 공익재단을 통해 승계가 이루어져 상속세 부담이 완화되었음
  - 발렌베리의 지배구조가 가능했던 건 노사정 대타협(샬트세바덴 협약) 때문임
    - ✓ 기업 오너는 상속세 없는 공익재단 출연, 차등의결권 등을 허용받는 대신 고용을 지키며 수익 대부분을 기부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음
    - ✓ 현재 발렌베리 재단은 배당수익의 80%를 과학기술, 의료, 대학연구사업 등 사회에 환원하고, 20%만 계열사에 재투자하고 있음



### 3. 해외 대기업 경영권 승계 사례

기업 (가문, 국적)	승계 세대	기업승계 관련 활용 제도	특징 및 시사점
Ford (Ford, 미국)	·4세대	·차등의결권 ·공익재단 ·차등의결권 가문 내 거래 협약	·창업주 Henry Ford가 1935년 차등의결권과 재단설립을 결합, 상속세 부담 최소화 및 지배력 유지하는 방식으로 승계 ·차등의결주에 대한 가문 내 주식거래 협약으로 세대를 넘어 지 분 및 지배력 희석 문제 해결 ·Ford Foundation, Ford Fund 등을 통한 공익기여
Henkel (Henkel, 독일)	·5세대	·가족지분 풀링협약 ·일부 가족이 설립한 재단	·가족 간 합의를 통한 총수 선출 및 가문 지배력 희석 방지를 위 한 가족지분 풀링협약 체결 ·1985년 최초 체결, 3회 연장으로 2033년 유효 ·협약은 판례를 통해 민법상 조합으로 법적 지위 인정 ·가족 간 다양한 소통기회로 유대감 강화 및 기업가치 공유
Heineken (Heineken, 네덜란드)	·4세대	·다층적 지주회사 ·공익재단	·2단계 지주회사지배구조로 승계과정 지배력 유지와 상속세 완 화 ·공익재단을 통한 상속세 완화 ·여러 세대에 걸친 기업존속을 고려한 장기적인 기업승계 계획 수립
발렌베리 (Wallenberg, 스웨덴)	·5세대	·차등의결권 ·지주회사 ·공익재단	·지주회사와 차등의결권으로 지배력 유지 ·지주회사는 공익재단을 통해 지배하고, 승계는 공익재단을 통해 이루어져 상속세 부담 완화 ·공익재단을 통한 활발한 사회기여활동으로 사회적인식 제고





# Contents

**I. 검토 배경**

**II. 기업승계 관련 상속세제**

**III. 상속세제의 국제비교**

**IV. 개선과제 제언**

- 1. 현행 상속세제의 문제점**
- 2. 개선방안 제언**

# 1. 현행 상속세제의 문제점

- ◆ OECD 2위의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율
- ◆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로 만드는 획일적인 최대주주 할증평가
  - 상속재산의 감소 뿐만 아니라 경영권의 승계도 불확실해져 기업가 정신이 약화될 우려
  - 경영권 프리미엄에 근거한 주식 할증평가는 경영실적, 성장잠재력, 대외 위험도, 경영진의 능력과 성향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할증률의 적정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획일적인 현행 할증과세 방식은 과세근거가 취약함
- ◆ 엄격한 사전, 사후 요건으로 인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유명무실화
  - 가업상속공제의 대표자 경영기간, 고용유지, 업종유지, 자산유지 등 사전·사후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활용하려는 기업인이 적고 실제 공제금액도 작아서 큰 의미가 없음
- 기업승계시 상속세는 기업실체(business entity)의 변동없이, 단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기업승계시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 2. 개선방안 제언

- ◆ 부진한 국내경제를 살리기 위해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이 중요시 되는 현재 시점에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상속세 장벽은 해소되어야 함
  - 기업승계가 기업의 계속성, 더 나아가 국가경제의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관련 상속세제는 개편될 필요
- ◆ 한국의 경우 '부의 대물림'이라는 강한 사회 인식 때문에 기업의 경영권 승계(상속)에 대해서 적극적인 제도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있음
  -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경영권 승계시 과도하지 않은 부담을 지운다면 기업가의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고용 및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임
  - 대타협을 위해 부정적인 사회 인식을 불식시키려는 대기업의 노력, 예를 들어 발렌베리재단의 적극적인 사회적 기여, 즉 공익재단의 사회 환원이 필요
    - ❖ 다만, 공익법인의 주식출연을 완화하고, 해당 주식에 대해서는 일정 배당(평균 배당성향의 120%)을 의무화하는 방안 고려(적극공익법인)



## 2. 개선방안 제언

### ◆ 1) 상속세율 인하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불법적으로 재산이 축적되었을 거라는 것과 '상속은 불로소득'이라는 관점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어 상속세로 인한 국부유출, 고용 감소, 성장둔화 등 경제적 손실을 간과
- 이에 따라 세율은 일본에 이어 세계최고 수준이며, GDP대비 상속세부담은 OECD 국가 중에서 3위를 기록
- **현행 상속세율을 소득세율과 동일(예, 프랑스)하게 하거나 낮게 유지(예, 독일)하는 개편을 고려할 필요**



## 2. 개선방안 제언

### ◆ 2)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 현행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는 회사의 자산, 업종, 경영실적, 성장잠재력, 대외 위험도, 경영진의 능력과 성향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할증액을 산정하여 구체적인 타당성 결여
-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OECD국가 중 최고수준인 상속세율을 더욱 과중하게 만들어 원활한 기업승계에 큰 걸림돌로 작용

### ➤ 따라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 ✓ 세법개정안은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제도를 폐지하거나 일반기업의 할증과세율을 20%에서 10% 수준으로 하향조정해야 실질적인 완화효과가 기대됨



## 2. 개선방안 제언

### ◆ 3)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 (자본이득세 도입)

- 가업상속공제의 부분적인 보완이 아니라, 기업승계 관련 전면적인 자본이득세 도입을 고려해야 함
- 기업승계에 대한 '자본이득과세의 도입'을 통해서 기업의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고, 자산 처분시 사망자와 상속인 모두의 자본이득을 과세하기 때문에 조세형평 측면에서도 문제되지 않을 것임
- **구체적인 방안으로 승계취득가액 과세는 기업승계시 주식이나 사업용자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사망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하여 상속인의 양도시점에서 과세하는 것임**
  - ✓ 적용대상은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에 비해서 사전·사후요건도 완화해야 함
  - ✓ 다만,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한 경우 위반시점 기준으로 계산된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상속세를 부과해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해야 함



## 2. 개선방안 제언

### ◆ 기업승계 시 자본이득과세제도 도입방안

구분		현행 가업상속공제	자본이득과세 도입방안
요건	적용대상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자산 5천억원 이하 중소기업	<기업규모 제한 X>
	가업 및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기간 중 50% 이상 대표자 종사 <지분율> ·특수관계인 포함 50% (상장 30%) 이상	<기업영위기간> ·5년 이상 경영 <지분율> ·특수관계인 포함 30% (상장 20%) 이상
	상속인	·2년내 가업종사 및 대표자 취임	·2년내 대표자 취임
지원방법		<공제> 주식, 사업용자산 등 가액 100% <한도> 200억원(10년이상), 300억원(20년이상), 500억원(30년이상) <양도소득세> 부동산, 주식등은 추후 처분시 양도소득세 과세	<과세이연> ·상속시 주식, 사업용자산 비과세 ·대상자산 처분시 자본이득과세
사후관리		<사후관리기간> 10년(개정안 7년) ·가업유지: 대표자 유지, 휴·폐업 금지, 업종유지[소분류내 변경허용(개정안 중분류)] ·가업자산 20% 이상 처분금지 ·지분유지 ·고용유지: 매년 80% + 10년 평균고용 100%[중견기업 120%(개정안 100%)]	<사후관리기간> 5년 ·기업유지: 휴·폐업 금지 ·자산 20% 이상 처분 금지 ·지분유지 ·고용유지: 총급여기준 매년 100%(대기업 110%)



A blue-tinted photograph of a city skyline at dusk. In the foreground, a large, multi-arched bridge spans across a body of water, its arches and supports illuminated with bright lights. The city skyline in the background features several tall buildings, including a prominent skyscraper on the left. The sky is a deep blue with some light clouds.

감사합니다